

일본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n Access Charge Rules in Japan

김방홍(P.R. Kim)

공정경쟁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김병운(B.W. Kim)

공정경쟁연구팀 선임연구원

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최근 들어 통신시장 대외개방, 다수 사업자 출현, 시내경쟁도입, 인터넷 및 무선통신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우리 나라 통신시장이 광범위하고도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 배경에는 기술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 진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다수사업자를 출현시키면서 정보통신시장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통신 선진국,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경쟁 우위력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통신시장 개방을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상호접속 문제가 통신산업의 세계적 중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등 통신 선진국에서는 앞다투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공정·유효 경쟁촉진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각 합리적인 상호접속체계 및 접속료 산정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아 우정성 산하의 전기통신심의회는 1996년 4월에 「접속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부회」를 설치하고, 관계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상호접속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부회는 네 개의 소위원회로부터 30회에 이르는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8회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토의를 거듭한 결과 1997년 9월 20일 「접속기본규칙안」을 작성하였다[1].

한편 일본에서는 1996년 12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접속의 기본적 규칙의 형태에 관하여」)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접속료 산정 검토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에 장기증분비용모형 연구회가 설치되면서, 장기증분비용모형(안)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공모가 마감되었고, 이를 토대로 1998년 1월부터는 모형(안)에 관한 연구가 장기증분비용모형 연구회를 중심으로 착수되었다. 일본에서 장기증분비용모형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1998년 5월에 미국은 실질적인 통신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일본에 요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1998년 5월의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 강화발의안」 공동현황보고서에서는 그때까지 미정이었던 장기증분비용의 도입 방침이 확정되었다. 미국은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 공동현황보고서」 발표를 통하여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과 접속료 인하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2].

한편 1998년 6월, 멀티미디어시대를 향한 요금·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회보고(「보편적 서비스의 새로운 확보방안에 대해서」)에서는 접속요금의 산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에다가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비용산정이 장기증분비용모형작성의 새로운 목적으로서 추가되게 되었다. 1998년 7월부터는 장기증분비용방식 모형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99년 3월에는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을 가능한 한 조기에 도입하도록 2000년 봄, 정기국회에 소요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1999년 4월에는 해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1999년 7월에는 연구회가 작성한 모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8월 26일 기한의 제1차 의견수집 시에는 국내외 사업자,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함께 2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9월 6일 기한의 제2차 의견수집 시에는 국내외 관계자로부터 함께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3].

우정성은 연구회 보고를 토대로 접속료산정의 형태에 대해서 1999년 9월 21일, 전기통신심의회에 자문하여 검토단계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장기증분비용방식 도입을 포함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0년 5월 12일에 성립, 19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우정성(현재 총무성)에서는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기로 하였다[4],[5].

전기통신심의회(회장 那須 翔)는 접속료규칙(안)

과 관련하여 각 사업자들로부터 2000년 8월 31일에 의견청취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20일에는 우정성에 답신을 제출하였다. 우정성에서는 이 답신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접속료 규칙에서는 종래의 접속료 규정을 일원화시킨 것 이외에 (1)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 (2) 동서 NTT가 실시하는 통신량 등의 기록, (3) 사업자용 할인요금(carriers rate)의 도입(전용역무 관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하에서는 2000년 10월에 우정성이 제정한 접속료 규칙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본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접속료 규칙 제정이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가 접속료 규칙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행 접속료 규칙의 근거 법률 및 개관

1. 현행 접속료 규칙의 근거 법률

일본의 접속료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6] 제38조의 2, 제3항·제1호·나, 제3항·제2호, 제4항, 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1) 제3항. 총무대신은 전 항¹⁾의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항을 인가해

1) 제38조의 2 제2항: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하여 당해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금액(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접속료」라고 한다.) 및 접속조건(제4항에서 규정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을 제외)에 대해 접속약관을 규정,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야 한다.

제1호. 다음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할 것

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것이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접속개소 중 표준적인 것으로서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개소에서의 기술적 조건

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능별 접속료

다.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가.에서 다.까지의 사항 외에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호. 접속료는 능률적인 경영을 토대로 적정한 원가를 산정한 것이어야 하며,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원가에 비추어 공정 타당할 것

(2) 제4항. 전항 제2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지정전기통신설비를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고도로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새로 구성했을 경우에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으로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련된 통신료 또는 회선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게 될 당해 지정전기통신역무에 관련된 비용을 감안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제10항.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관련된 제3항 제1호 “나”의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기능별로 통신량 또는 회선수 그 외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2항에 있어서 「통신량 등」이라고 한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4) 제12항.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접속료에 있어서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그 외의 접속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의 회계를 정리했을 때 통신량 등의 기록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제3항 제2호의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원가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게 되도록 접속료를 재계산해야 한다.

2. 접속료 규칙의 개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접속료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2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기능, 제3장 자산 및 비용, 제4장 원가산정, 제5장 접속료설정, 제6장 통신량 등의 기록, 제7장 재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용어, 제3조에서 준수의무를 다루고 있다. 접속료 규칙의 제정목적은 지정전기통신설비²⁾와의 접속과 관련하여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7]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접속료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나”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을 비롯하여 기능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방법, 통신량 등의 기록 및 재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별 접속료가 적정하고 명확하게 결정되고 능률적인 경영을 전제로 원가에 비추어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25호),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26호) 및 지정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1997년 총무성령 제91호. 이하 「접속회계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기능에 따른 접속료와 관련하여 이 성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만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이 성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제2장은 제4조와 제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2) 지정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가입자회선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입자회선을 가지고 있는 고정통신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시장이란 사회경제 생활권으로서의 일체성 및 현재의 통신망 구성을 고려하여 도도부현(道都府県)을 단위로 한다.

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법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나”의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기능은 13개의 기능(1. 단말회선전송, 2. 단말계교환, 3. I인터페이스가 입자모듈반환, 4. 시내전송, 5. 중계계교환, 6. 중계전송, 7. 통신로설정전송, 8. 신호전송, 9. 호관련 데이터베이스, 10. 번호안내, 11. 수동교환, 12. 공중전화, 13. 단말간 전송)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능에 대응하는 대상설비, 부속설비 및 이들을 설치하는 토지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법 제38조의 2 제4항의 기능에 관한 자산 및 비용의 정리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원가산정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접속료 원가³⁾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능에 관한 지정설비관리운영비⁴⁾에 타인자본비용(제11조), 자기자본비용(제12조) 및 이익대응세(제13조)의 합계액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⁵⁾ 그리고 접속료원가의 산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기통신역무가 신규인 동시에 향후 상당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접속료원가 산정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장은 접속료 설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접속료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별로 당해 접속료 수입이 당해 접속료 원가에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기타 교환기능·전송기능·단말간 전송기능에 관한 접속료를 각각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취급하고 있다.

제6장은 통신량 등의 기록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법 제38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할 경우,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기록은 전자적(電磁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장은 재계산 및 정산을 취급하고 있다. 법 제

38조의 2 제12항의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접속료의 재계산 기간은 3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0조와 제21조는 접속료 재계산, 제22조는 정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칙에서는 제1조에서 시행기간, 제2조에서 일부 총무성령의 폐지, 제3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25호)의 일부 개정, 제4조에서 지정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1997년 총무성령 제91호)의 일부 개정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5조 이하에서는 경과조치를 다루고 있다.

III.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

1.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

가. 기능별로 서로 다른 원가산정방식

접속료 설정 단위인 기능구분(접속료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과 그 구분별 접속료의 원가산정 방식은 <표 1>과 같다. 원가산정방식은 장기증분비용방식과 실제비용방식으로 나뉜다.

나. 장기증분비용방식에 기초한 자산과 비용의 보고의무

제6조에서 동서 NTT는 장기증분비용방식에 따라 현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설비와 기술로 새로 구축했을 경우의 네트워크 자산과 비용을 총무대신이 통지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당해 통지로부터 60일~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통지에서 정해지는 당해 절차의 적용일까지 정리하여 이것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원가산정 및 접속료 설정(제7조~제18조)

제7조에서 제18조에서는 접속료 원가는 지정설비관리운영비,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및 이익대응세의 합계로 한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접속요금 체

3) 제4조의 표13항 기능에 관한 접속료는 제외한다.

4)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5) 타인 및 자기 자본비용, 이익대응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타인자본비용 =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에 관한 요금기저 × 타인자본비율 × 타인자본이자율
 자기자본비용 = 당해 기능에 관한 요금기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이자율
 이익대응세 = [자기자본비용 + (유이자부채 이외의 부채액 × 이자상당률)] × 이익대응세율

<표 1> 기능별 원가산정방식

기능 구분		원가산정방식
1. 단말회선전송기능	가입자회선(dry copper)	실제비용방식(*1)
	가입자회선(line sharing)	실제비용방식(*1)
	PHS 기지국회선	실제비용방식(*1)
	전용선단말회선	실제비용방식(*2)
2. 단말계교환기능	단국교환기(GC)	장기증분비용방식(단, 번호이동성은 실제비용방식(*3))
	우선접속기능	실제비용방식(*3)
3. I인터페이스가입자모듈 반환기능	ISM(정액)	실제비용방식(*3)
4. 시내전송기능	GC-GC 회선	장기증분비용방식
5. 중계계 교환기능	중계교환기(ZC)	장기증분비용방식
6. 중계전송기능	GC-ZC 회선(공용형)	장기증분비용방식
	GC-ZC 회선(전용형)	실제비용방식(*2)
7. 통신로 설정 전송기능	전용선	실제비용방식(*2)
8. 신호전송기능	신호망	장기증분비용방식
9. 호관련 데이터베이스 기능	호관련 데이터베이스	실제비용방식
10. 번호안내기능	번호안내	실제비용방식(*4)
11. 수동교환기능	오퍼레이터에 의한 교환	실제비용방식(*4)
12. 공중전화기능	공중전화	실제비용방식(*1)
13. 단말간 전송 등 기능	사업자용 할인요금	실제비용방식(*5)

- *1: 가입자회선의 모델에 대해 지중화의 실태를 토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전용선에 대해 모델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 *3: 새로운 기능으로 모델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 *4: 1998년도의 전면 위탁화를 토대로 한 모델개정이 필요하다.
- *5: 이용자 요금 할인

계의 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법 제38조의 2 제4항의 기능에 관한 접속료의 경우, 지정전기통신설비의 자산 및 비용에 입각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기타 기능에 관한 접속료의 경우에는 접속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지정설비관리부문에 정리된 자산 및 비용에 기초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라. Model C의 채용

과거 미국은 USTR의 미일 제1, 2차 공동보고서(Joint Status Report)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속료 수준의 인하와 접속료산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여 왔다[8],[9].^{6) 7)} 미국 당국은 1999년 7월 말 일본 우

정성이 발표한 「LRIC 모형연구회 보고서」 [10]에 대해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속료 수준은 미국에 비하여 3~4배 높은 수준이어서 일미 양국간 합의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보급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값비싼 일본 국내 통신비용 인하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일본 우정성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개선요구를 전달하였다. 한편 우정성으로부터 LRIC 방식에 대해 자문을 받은 우정성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는 최종적으로 「① NTT의 경영 ② 일반 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③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를 감안하여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Model A는 현행 제도를 전제한

6) USTR, “First Joint Status Report on The U.S.-Japan Enhanced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1998. 5. 15.

7) USTR, “Second Joint Status Report under The U.S.-Japan Enhances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1999. 5. 3.

<표 2> 우정성의 산정방법에 따른 접속요금

(단위: 엔/3분)

		1998	1999 (현행요금)	2000	2001	2002
단국교환기 (GC) 접속	요금	5.81엔	5.57엔	4.96엔 (-14.6%)	4.62엔 (-20.5%)	4.50엔 (-22.5%)
	진척률	-	-	45%[57%]	25%[32%]	8%[11%]
					70%[89%]	
중계교환기 (ZC) 접속	요금	11.98엔	10.64엔	7.66엔 (-36.1%)	5.90엔 (-50.8%)	4.78엔 (-60.1%)
	진척률	-	-	49%[51%]	29%[30%]	18%[19%]
					78%[89%]	

주 1) () 안은 1998년도 접속요금에 대한 인하율

2) 진척률은 1999년도 통화량기반의 모형요금에 대한 현행요금으로부터의 진척률

3) [] 안은 1998년도 통화량기반의 모형요금에 대한 현행요금으로부터의 진척률

<자료>: 東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 相互接続推進部, 相互接続の動向, 2000. 8., p. 8.

모형이며, Model B는 원격수용장치(Remote Terminal: RT)를 가입자회선에 귀속시킨 모형이다. 즉 Model A에서 시내교환(단국) 비용에 산입되어 있는 원격수용장치 비용을 가입자회선으로 배분하면 Model B가 된다. 이 경우, 단국 비용이 하락하는 한편 가입자회선비용은 상승한다. Model C는 Model A의 개조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Model A가 1997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인데 반하여, Model C는 1998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Model A와 비교하면 Model B는 RT의 귀속에 따라 단국 접속일 경우의 비용이 3분 기준, 약 24% 인하되는 한편, 가입자회선 비용은 월 300엔 이상 인상된다. 이 결과는 원격수용장치 비용을 가입자회선에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기본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서 교환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원격수용장치를 가입자측 설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접속료에서 원격수용장치 비용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측에서는 이 경우 기본요금일 월 300엔 정도 인상되어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Model B)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Model C를 채용하였다.

마. 2000년도~2002년도에 있어서의 조치(부칙)

- ① Model C를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우정성은 “Model C(199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단국교환기(GC) 접속에 22.5% 인하, 중계교환

기(ZC) 접속에 60.1% 인하)”를 바탕으로 한 상호접속요금 인하가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도록 법령을 수정하였다(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제1항, 부칙 제9조).

- ② 최초 2년간에 걸쳐 요금인하 목표의 대부분 달성: ①과 관련하여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은 1999 회계년도의 통화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첫 2년 이내에 ZC 교환과 GC-ZC 전송에 대해 80%, GC 교환과 다른 기능들에 대해 70%의 인하를 먼저 실시한다. 그 결과, 1998 회계년도 요금에 비하여 GC 요금은 2001 회계년도까지 약 20%가 인하되고 ZC 요금은 2001 회계년도까지 약 50%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부칙 제8조 제2항) [11].
- ③ 2000년도 접속요금의 소급적용: 우정성은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2000년도 접속료를 2000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을 환영한다(부칙 제10조).
- ④ Model C의 2년 후 개선: Model C에 대해 우정성은 내용연수, 입력치(기기가격, 통화량), 가입자회선 비용 등에 관하여 2000년 8월부터 모형 수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완료되도록 할 것이다. 우정성은 2002년에 2001 회계년도의 통화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된 LRIC 모형을 가지고 LLU 가격결정과 추가적인 상호접속요금 인하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2002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의 가능성과 함께 결정할 것이다(부칙 제16조).

- ⑤ NTS 비용회수 검토: 우정성은 통화량에 민감하지 않은 NTS(Non Traffic Sensitive) 비용을 종량제 접속료로 회수할 것인지 가입자회선비용으로 취급하여 정액제로 회수할 것인지 여부를 2000년 가을부터 검토 개시하여 2002년에 결론 짓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정성은 수정된 LRIC 모형이 (i) 보편적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ii)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의 사업경영에 파괴적이지 않도록, 그리고 (iii) 사용량 기준 상호접속요금에서 최종이용자의 정액요금으로 제도를 변경시키는 데 대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부칙 제16조).

2. 동서 NTT가 실시하는 통신량 등의 기록 (제19조, 별도표 제6~별도표 제8)

접속료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통신량 등에 대해 동서 NTT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행정구역(道都府県)별 통신량(통신횟수 · 시간) 기능
- 단위요금 구역별 통신량(통신횟수 · 시간)
- 행정구역별 회선수
- 단위요금 구역별 회선수
- 국별 회선수
- 기능의 이용횟수 등

법 제38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할 경우, 제1항 및 전항의 기록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6개월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해 두도록 한다. 이 때, 제1항 및 전항의 기록은 전자적(電磁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자용 할인요금의 도입

단말간 전송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이용자 요금

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설정하는 사업자용 할인 요금을 설정하도록 (당분간 전용업무 관계에 한정)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조, 제18조, 부칙 제14조 참조).

IV. 접속료 규칙에 관한 각계의 견해

1. 제3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제3조⁸⁾의 단서에 기초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의 허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TTNet, JT, DDI).
- 2) 우정성 견해: 3조 단서에 기초하여 허가 받은 사항과 관련된 인가신청에 대해서는 매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도 현재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 제4·5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제4, 5조와 관련하여 NTT를 제외한 많은 사업자들이 단말회선 전송기능을 비롯하여 모든 기능에 대해 장기증분비용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회선 세분화를 동선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되며, 광섬유도 단말회선 전송기능으로 추가하고, 장기증분비용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access, 일본교신망, 텔레서비스협회 등).
- 2) 우정성 견해: 접속료 규칙에서는 「지중화의 실태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가입자회선(dry copper 및 line sharing)의 접속료 산정에 실제비용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성령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실제비용방식을 적용하는 단말회선 전송기능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증분비용모델

8) 제3조: 사업자는 기능에 따른 접속료와 관련하여 이 성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이 성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증분비용모델의 수정작업을 기다린 후, 수정 후의 모델 적용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에 대한 시비를 가릴 것이다. 광섬유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요동향도 나타나 있는 바, 정비 규정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건에 관해서는 2000년 10월 11일에 우정대신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1997년 6월 20일 법률 제97호) 부칙 제15조에 기초한 접속 규정의 수정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3. 제6조 관련

1) 사업자 의견

- ① 장기증분비용방식에 기초한 자산과 비용에 대한 통지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DDI).
- ② 장기증분비용모델에 의한 접속비용 산정은 가상 망 방식이 아니라 실제 선로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가격 하락이 심한 광섬유, 교환기 설비, 집선 장치 등에 대해 채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그 상당 비용을 토대로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筒井).

2) 우정성 견해

- ①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산 및 비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한, 그러나 과도하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 ② 현재의 선로가 반드시 효율적으로 부설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막대한 가입자회선수의 파악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외국에서도 장기증분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가상 망 방식에 의한 효율적 망설치를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본 모델에서는 광섬유 등의 설비 단가에 대해서는 복수사업자의 최신 취득가격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값을 채용하고 있다. 의견에서 제시한 채취득 가격이 동 기능의 설비를 현시점에서 취득

한 경우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본 모델에서도 채취득 가격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제8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이익대응세는 일본의 세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그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익대응세와 이익을 접속료에 포함해서는 안된다(일본교신망 등).
- 2) 우정성 견해: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정하는 요금에 이익대응세분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세법상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NTT 동일본·서일본이 접속료로 회수해야 할 자기자본비용 등에 대해서는 접속료 규칙에 규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적절한 수치로 설정하기로 하였고, 그 상당액 및 적정수준에 맞는 이익대응세 상당액을 접속료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5. 제19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접속요금 체계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하는 요금체계와 정액제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筒井).
- 2) 우정성 견해: 본 규칙에는 종량제와 정액제 각각의 요금체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요금체계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접속사업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제20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장기증분비용방식을 적용하는 기능의 재계산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DDI).
- 2) 우정성 견해: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틀 내에서, 장기증분비용모델의 입력데이터의 갱신시기 및 경과조치 종료 후에 재계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였다.

7. 제21조 관련

1) 사업자 의견

- ① 이번에 인터넷페이지가입자모듈(ISM) 반환기능이 접속료 규칙 제4조의 표에 추가되고, 또한 전용역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용 할인요금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단 사업자용 할인요금이 전용역무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ISM 반환기능은 정액제로 제공되고 있고, 이것은 전용역무의 요금체계와 같다는 점을 생각하면 ISM 반환기능에 대응하는 접속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용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C&W, IDC).
- ② 접속료 규칙 제6조 제3항에 있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원가」는 현재 총괄원가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고,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또한 재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사업자용 할인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e-access).

2) 우정성 견해

- ① ISM 반환기능을 제공하는 NTT 동일본·서일본의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3호의 시험 역무 서비스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당해 기능에 대해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4에 의해 적정한 원가에 비추어 공정타당한 것으로서 접속료의 인가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자용 할인요금에 대해서는 본 규칙 부칙 제13조에 의해 당분간은 전용역무에만 적용되지만, 공중망에서의 사업자용 할인요금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심의회 답신서(2000년 9월 26일 우정전기통신심의 제3107호)에서 지적한대로 그 실현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② NTT 동일본·서일본의 이용자 요금에 대해 총괄원가방식에 의한 인가제는 전보요금을 제외하고 폐지되었고, 기본적으로 양사가 산정근거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할 의무는 없지만, 단말간 전송 등 기능의 접속료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산정 근거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요금의 원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단말간 전송 등 기능의 접속료와 같은 방식의 사업자용 할인요금은 약관의 의무에도 적용·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8. 부칙 전체 관련

- 1) 사업자 의견: 규칙의 운용이나 수정 시에 사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종의 조치가 강구되기를 바란다(NTT 동일본·NTT 서일본).
- 2) 우정성 견해: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 및 향후 운영이나 수정 시에는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로 NTT 동일본·서일본이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조건이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부칙 제6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가장 최근의 통신량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접속료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부칙 제6조에서 제시하는 1998년도의 통신량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6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2000년 7월의 접속료에 관한 미일합의의 공표 내용과도 모순된다. 2000년도에 대해서는 1999년도의 통신량을 이용하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의 통신량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C&W, IDC).
- 2) 우정성 견해: 「제3회 공동현상 보고」 [12]에서는 NTT 동일본·서일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써 2002년도까지의 3년간 「1998년도와 비교할 때 GC 접속은 22.5%, ZC 접속은 60.1%가 인하」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되어 있는 인하 폭은 1998

년도의 통신량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본 성령안 부칙 제6조는 이 견해에 따른 접속료 인가신청을 가능케 하기 위한 규정이다.

10. 부칙 제6, 7조 관련

- 1) 사업자 의견: 부칙 제6조를 삭제해 주기를 강력히 요망하지만,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허가에 관련된 심사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총무성이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무성 및 심의회는 장기증분비용에 관한 보고서(2000년 2월 9일) 「접속료 산정형태에 대해」에서 NTT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편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용자 간의 부담 변동 등을 완화하는 모델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허가 기준으로 NTT라는 특정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완화」라는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용자의 이익 및 공공의익도 추가해야 한다(C&W, IDC).
- 2) 우정성 견해: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공표될 필요가 있지만, 본 규칙의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허가에 대해서는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부칙 제6조 및 제7조 이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허가 신청 시에는 「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우정성 심의회는 NTT 동일본·서일본의 접속료에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NTT 동일본·서일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i) 「NTT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장기증분비용방

식의 실시로 NTT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NTT가 법률상의 책무로 지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는 사태를 회피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ii) 「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NTS 요금을 이용자에게서 정액요금으로 회수하기로 했을 경우 통신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반해 기본료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향후 2002년에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모델이 수정되는 기간동안 검토를 하고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11. 부칙 제8조 2 관련

- 1) 사업자 의견: ISM 교환기능의 접속요금은 폐지해야 한다. 이 요금이 왜 필요한지 미국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실제비용방식(historical cost)에 기초한다 해도 ISDN 요금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ISDN 월액 요금은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ISDN 서비스의 비용을 커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요금은 요금의 이중회수라고도 할 수 있다. NTT의 지금까지의 접속회계에 의하면 아날로그와 ISDN 회선의 요금의 차이는 정액 인터넷접속에 필요한 기능인 ISM의 장치사용 기능과 관련된 요금이다. 이 장치는 라인 카드의 배치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인데, 그 요금은 최종 단말사용자의 월액 요금에서 거의 회수된다. 이 요금은 최종 단말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Non Traffic Sensitive Cost이다. NTT나 우정성 모두 ISM 이외에 ISDN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치를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ISDN 월액 요금의 차이(820억 엔)는 이 하나의 장치에 관련된 비용의 회수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 차액이 회수되어야 할 다른 비용이라면 우정성 또는 NTT는 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미국대사관).
- 2) 우정성 견해: 접속료 규칙 부칙 제5조부터 제8

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과 조치에는 1999년도의 접속료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완전하게 실시되는 2002년도 접속료로의 단계적 이행이 제시되어 있다. NTT 동서주식회사의 ISDN 가입자에게 착신하는 호의 접속료는 GC 접속의 경우 1999년도에는 실제비용방식으로 산정되는 가입자 교환기능의 접속료와 ISM 교환기능의 접속료를 합계한 것으로, 2002년도에는 장기증분비용방식으로 산정되는 가입자 교환기능의 접속료가 될 것이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단계적 이행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종전의 ISM 교환기능의 접속료가 2002년도의 완전폐지를 향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기타

1) 사업자 의견

- ① 향후에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되게 되므로 접속회계 규칙은 불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e-access).
- ② 설비구분의 변경 등 회계상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고, NTT 접속회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e-access).
- ③ 고객이 NTT 지역회사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라인 세어링 접속료는 매월 증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속료는 0원으로 해야 한다. MDF 교체 접속공사 등 상호접속에 소요되는 일시비용은 그 때마다 지불하고 있고, 그밖에 매월 증분비용이 발생할 근거가 없다(e-access).
- ④ 가입자회선의 장기증분비용 모델의 산정에 있어서 (i) 가입자회선의 자산 및 비용을 광섬유와 동선으로 명확히 분계하여 광섬유만을 이용하는 서비스, 동선만을 이용하는 서비스, 광과 동선의 양쪽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나누어 접속료를 산정해야 한다. 특히 드라이카퍼나 라인 세어링은 광섬유나 기선점 RT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선 비용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ii) 선로 길이나 관로의 이용 가격 등에 따라 지역 격차가 발생하므로 가입자회선요금은 각 행정구역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입자회선에 잠정적으로 실제원가방식이 적용될 경우라도 관로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NTT 접속약관에서 행정구역별 요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입자회선 세분화 요금에도 당연히 행정구역별 요금이 반영되어야 한다(e-access).

2) 우정성 견해

- ① 접속회계는 장기증분비용방식 도입 후에도 동방식이 도입되지 않은 기능의 접속료 산정이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전기통신설비 접속회계 규칙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시킬 것이다.
- ② NTT 동일본·서일본에 대해서는 접속회계보고서에 접속료 원가산정 상의 중요한 변경조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③ 대역분할 단말회선기능의 접속료 원가에 이용자 요금으로 회수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판단할 것이다.
- ④ 전기통신심의회답신(2000년 8월 31일, 우정성 전기통신심의 제3076호)에 따르면 광섬유와 동선을 분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단말회선 전송기능은 동선과 광섬유에서 각각 접속사업자의 용도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므로 그 접속료는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입자회선 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반영시켜 이를 행정구역별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심의회답신(2000년 2월 18일 우정성 전기통신심의 제111호)에 있는 그대로, 이용자 요금의 지역간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금설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별도표 제2의 2 관련

- 1) 사업자 의견: 행정구역별 토지단가시가지(土地單

價時価) 보정계수(補正係數)를 삭제하고, 지가, 지대,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참조해야 한다(筒井).

- 2) 우정성 견해: 공시지가는 샘플조사의 결과인데, 대다수의 국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모델에서는 1994년도의 고정자산평가액을 토지단가가 보정계수로 시가 환산하고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최신의 수치로 삼고 있다.

V. 맺음말

본론의 제II장과 제III장에서는 현행 일본의 접속료 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과 접속료 규칙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각각 개관하여 보았다. 제IV장에서는 제정 접속료 규칙의 핵심적 내용인 “LRIC 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 동서 NTT가 실시하는 통신량 등의 기록, 기업용 할인요금의 도입”의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LRIC 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접속료 규칙에 대한 각 사업자들의 의견과 거기에 대한 우정성의 견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III장의 내용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만들고 그 조문을 작성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V장에서는 접속료를 둘러싼 일본의 통신사업자들의 입장과 정부기관의 시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접속료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일본에서 신규로 제정된 접속료 규칙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선로 세분화와 광케이블 개방” 문제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국가자원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를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19호)에서 가입자선로를 시내전화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현재 가입자선로의 제공방식, 제공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안들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광케이블과 관련해서는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개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등의 소수 국가가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 광케이블 개방정책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13]. 광케이블은 부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설비이므로 일반적인 광케이블에 대한 접속제공은 광케이블을 부설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망고도화 유인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14]. 특히 국내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의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해외사업자들에게 무임승차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KT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신규 망구축을 광케이블로 부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광케이블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향후에는 다수사업자가 광케이블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접속료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통신사업자들은 허가 기준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공이익의 추가, ISM 교환기능의 접속요금 폐지, 장기증분비용방식 적용에 따른 접속회계규칙의 폐지, 광섬유와 동선을 이용하는 경우 접속료의 차별, 가입회선요금의 각 행정구역별 산정 등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대한 우정성의 견해는 제V장에 정리되어 있다.

접속료 산정 방식으로서 장기증분원가방식 도입 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일본이 1998년 5월에 발표한 「미일간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보고」에서 2000년에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식으로 장기증분원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통상성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일본 국내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간과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

확보, 이용자 요금 및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발·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점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참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접속료 산정방식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총괄원가방식에서 표준원가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증분비용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WTO의 정책결정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접속 규칙에 관한 동향을 추적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기술변화가 격심한 통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郵政省 電気通信審議会 接続円滑化に関する特別部会, “接続の基本的ルール案,” 1996. 9. 20.
- [2] 김방룡, “일미간 통신협상 결과와 시사점,” 전자통신동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5권 제6호, 2000. 12., pp. 140 - 149.
- [3] 김방룡, “일본의 통신상호접속 요금정책 동향 및 시사점,” 기술혁신학회지, 한국기술혁신학회, 제2권 제3호, 1999. 12., pp. 129 - 144.
- [4] 日本 郵政省, 接続料算定の在り方について, 1999. 9. 21.
- [5] 総務省 郵政事業庁, 接続料規則の制定, www.mpt.go.jp/pressrelease/japanese/denki/001020j607.html, 2000. 10. 20.
- [6] 日本 總務省, 電気通信事業法, 法律 第86号, 1984. 12. 25.
- [7] 김방룡, “일본의 상호접속정책 동향,” 주간기술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2권 제3호, 1997. 2. 19., pp. 1 - 19.
- [8] USTR, “First Joint Status Report on The U.S.-Japan Enhanced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1998. 5. 15.
- [9] USTR, “Second Joint Status Report under the U.S.-Japan Enhances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1999. 5. 3.
- [10] 日本 郵政省, 長期増分費用模型研究会報告書案, 1999. 7. 30.
- [11] 東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相互接続推進部, 相互接続の動向, 2000. 8., p. 8.
- [1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ird Joint Status Report on the U.S.-JAPAN Enhanced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2000. 7. 22.
- [13] IIR, 「Interconnection 2001」,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Recent Development and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LLU in Italy, 2001. 3.
- [14] 中川 ヒロミ, NTTの光ファイバ開放策の效力, NIKKEI Communications, 2000. 11. 20., pp. 114 - 200.